

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

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신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

발의의원 : 신달호 의원,

김은영 의원, 곽동환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,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달성군 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군수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스마트농업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다.
2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3. “스마트팜”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)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
2. 스마트팜 시설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

기반 시설의 조성·관리·운영

3.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·유통·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

4.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

5.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·기획·유통·광고·회계·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

6.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5조(홍보)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, 연구소,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** (발췌)**□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2024.7.25. 제정, 2024.7.26. 시행)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.
2. “스마트농업데이터”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·문자·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기반 시설의 설치, 노후 장비 교체,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따라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활동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(안 제5조).
-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행정적·사업적 지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(안 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, 개별 사업의 구체적 범위·대상·규모 등은 향후 시책 수립 및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결정될 사항임
- 특히 스마트농업은 기술 수준, 농가 수요,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이 크게 달라지므로,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 성 군 의 회 의 원

성 명 (연 락 처)

신 달 호 (☎ 2049)